

「2018년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경력경쟁채용(일반임기제)」 최종합격자 공고 및 채용후보자 등록안내

「2018년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경력경쟁채용(일반임기제 9급)」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2월 21일
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

1. 최종 합격자

임용예정 분야	임용예정 등급	선발예정인원	합격자
재난대비역량 지원과정운영	일반임기제 행정9급	1명	2018-2 이○우

2. 합격자 등록 안내

가. 등록대상 : 최종합격자

나. 등록기간 : 2018. 12. 21.(금) ~ 12. 24.(월)

다. 등록방법 :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 협력과로 제출

라. 제출서류

- ① 신원진술서 2부 <서식 1>
-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<서식 2>
- ③ 채용 신체검사서 1부 <서식 3>

- 국·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(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)된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함.

-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검사에서 발급까지 3~5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은 후 제출(검사결과 합격여부 표기가 있어야 함)

④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<서식 4>

※ 각 경력증명서(근무부서, 담당업무 명시), 병적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서 첨부

⑤ 가족관계등록서류 총 5부

-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
- 본인의 기본증명서 2부 - 주민등록등본 1부

※ 기본증명서는 ‘일반’이 아닌 ‘상세’ 형태로 발급받아서 제출할 것

⑥ 사진 1매 : 반명함판 3×4, 상반신 탈모

3. 유의사항

가. 정해진 기한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「공무원임용령 제11조(합격자의 등록)」에 따라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나. 채용후보자 등록,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.

※ 신원조회·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

☎ 문의 :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041-560-0014

<서식 1>

[별지 제20호서식] <개정 2017.2.22.>

신 원 진 술 서

※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성 명		한 자		주민등록번호		[사 진] (3cm×4cm) · (3.5cm×4.5cm)
등록기준지						
주 소						
실거주지						
직 장	직장명 : 소재지 :			연 락 처	직장전화 : 휴 대 폰 : E-mail :	
국 적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한민국	<input type="checkbox"/> 복수국적 국가명:	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국적 국가명:	배우자 및 자녀 국적		
특 기	취 미			자 격 증		
재 산	본인 및 배우자	부동산 :	만원,	동산 :	만원,	채무 : 만원
	미혼 자녀	부동산 :	만원,	동산 :	만원,	채무 : 만원
정당·사회 단체 활동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단 체 명		기 간	직 책	
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		. . ~ . .		
병 역	본 인	군 별	병 과	최종 계급	기 간	미필 사유
	자 (성명)				. . ~ . .	
	자 (성명)				. . ~ . .	
학 력	학 교 명	기 간		전공 학과	학 위	소 재 지
		. . ~ . .				
		. . ~ . .				
		. . ~ . .				

경 력	기관 또는 업체명		기 간	직 책(직급)	상벌 관계(일자)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해외 거주 사실	거주 국가		기 간	거주 목적	동반 가족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가족 관계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직 업 · 직 책	거 주 지
부모 배우자 자녀					
배우자 부모					
북한 거주 가족					
친교 인물	관 계	성 명	직 업 · 직 책	연 락 처	
<p>1.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>2.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</p>					
작 성 자 성명			년 월 일	인(서명 또는 날인)	

<서식 2>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-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. 이하 동일)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
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- 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- 본인(가족 포함)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 「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 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_____ 년 _____ 월 _____ 일
 성명 (서명)

- 본인 및 가족 동의 (자녀는 결혼·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,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)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	서 명	
		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
본인			자필서명	자필 서명
배우자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
※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(밑줄은 민감정보)

본 인(예시)	가 족(예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, 공무원인사기록(행자부·인사처) ■ 주민·범죄경력·수사·수배 조회자료(경찰청) ■ 출입국자료(법무부) ■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 ■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 ■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 ■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(행자부) ■ 출입국자료(법무부) ■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 ■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 ■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 ■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

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

<서식 3>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[별지 서식] <개정 2015.9.25.>

(앞쪽)

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	사 진 (3cm × 4cm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(한 자)	()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가슴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 좌: () 우: ()
안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치 아		호 흡 기 질 환	
간 질 환		신 경 질 환	
소 화 기 질 환		피 부 질 환	
순 환 기 질 환		정 신 질 환	
비 뇨 기 질 환		혈 청 검 사(매 독)	
흉 부 X선 검 사		기 타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	[] 합 격	합격 또는	
합격 여부	[] 불 합 격	불합격 사유	
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	[] 판 정 보 류		
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[의료기관]

-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-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-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'만성골수성백혈병'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- '매독(syphilis)' 양성으로 나타나나,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
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지 않음
 - 나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.1, 오른쪽 0.1
 -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(microliter)당 6만개 이하인 '혈소판 감소 자색반'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
 - ※ 판정 오류 사유: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-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<서식 4>

<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>

소 속 :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

직 명 : 일반임기제 행정서기보

성 명 :

([] 공무원경력, [] 군복무경력, [] 유사경력)

직장명	직종 및 직급	경 력 기 간 (연·월·일)			면직일	인사담당자 성명·연락처 이메일(필수)	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(연·월·일)	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(○급○호→○호)
		부터	까지	기간				

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확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

- 첨부 1. 경력증명서 1부(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명시)
2. 병적증명서 1부(군 제대자에 한함) - 주민센터 발급
3. 소득금액증명서 1부(全 근무기간 명시) - 세무서 발급

년 월 일
신청인 서명

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귀하